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12. 30(수) 10:20

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
(경제환경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합계 : 3개 부서 / 13건		21,858,235	18,422,089	62,010	16,014,807	2,345,272
지역경제과 (8건/15,296,189천원)	독산동 맞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	366,000	122,200	0	73,520	48,680
	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	331,000	330,000	0	199,200	130,800
	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	2,576,000	1,625,924	0	1,412,371	213,553
	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시설현대화)	8,485,240	8,457,700	0	7,128,240	1,329,460
	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(주차환경개선)	4,505,553	4,371,098	0	3,784,665	586,433
	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	153,000	21,019	0	18,217	2,802
	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	467,654	338,248	0	338,248	
	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	30,000	30,000	0	30,000	
도시재생과 (4건/3,063,890천원)	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	400,000	334,731	0	334,731	
	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	260,000	260,000	0	260,000	
	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	3,411,340	1,889,409	0	1,855,865	33,544
	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	599,100	579,750	0	579,750	
청소행정과 (1건/62,010천원)	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	273,348	62,010	62,010	0	

### 3. 검토의견

○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184억 2,208만 9천원으로

- 지역경제과는

- 독산동 맞나는거리 활성화지원 사업 등 8건 152억 9,618만 9천원이 이월되며
-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사업 3억 3천만원은 용역 준공 이후 추진할 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하며
-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 16억 2,592만 4천원은 부지매입 협상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며
-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84억 5,770만원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연도내 지출불가하여 이월하며
-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함

- 도시재생과는

-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건 30억 6,389만원이 이월되며
- 실시설계용역의 승인 필요 및 용역 계약 진행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에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연도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

- 청소행정과는

-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 1건 6,201만원이 이월되며  
서울시 교부금이 12월 결정되어 연도 내 지급 불가하여 이월함.

○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0. 9. 10.] [법률 제17390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